

말소리와 음성과학 논문 심사 규정

제정: 2009. 01. 14

개정: 2016. 03. 09

개정: 2019. 05. 10

개정: 2020. 12. 17

개정: 2024. 01. 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음성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학회지 ‘말소리와 음성과학’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출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장 1인은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2. 본회의 학문 분야(음성학, 음성공학, 음성 및 말장애)별로 1~6인의 편집위원을 두며 각 분야별로 편집부위원장을 2인까지 선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9인 이내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 선임, 임기 및 자격)

1. 편집위원장은 연구능력 및 관련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편집위원은 연구 능력 및 관련 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지명한다.
4. 편집위원은 본회 관련 학문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 책임(총평)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업무 범위)

1.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접수, 심사, 편집, 출판 등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부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접수하고,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확정 여부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는 등 해당 학문 분야의 논문 심사를 총괄한다.
3.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추천, 논문의 심사, 심사 결과의 총평을 담당한다. 편집위원이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담당할 경우 책임(총평)편집위원이 된다.
4. 책임(총평)편집위원은 편집부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책임(총평)편집위원은 배정된 논문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총평을 하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심사위원으로서 그 논문을 심사한다.
5.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도와 논문의 최종 편집 등 학술지의 발간에 필요한 실무 처리를 담당한다.
6.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조 (논문심사 원칙 및 기준)

1. <논문심사 원칙>

- ① ‘말소리와 음성과학’은 독창성이 뛰어나고 학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논문을 실는다.
- ② ‘말소리와 음성과학’은 본회 관련 학문 분야의 논문, 서평, 기술 해설 등을 게재한다.
- ③ ‘말소리와 음성과학’은 본회 회원의 논문을 게재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알리고 심사위원이 논문 심사를 수락하면 이의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심사의 종류>

- ① 투고논문의 심사는 일반투고논문심사와 긴급투고논문심사로 나눈다.
- ② 일반투고논문심사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일반투고논문심사는 심사 결과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심사와 출판이 다음 호로 넘어갈 수 있다.
- ③ 긴급투고논문심사는 “가장 가까운 발행일에 논문을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자가 긴급심사를 요청하고 긴급심사료를 납부한 후 늦어도 투고마감일 경과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 논문의 심사”를 말한다. 긴급투고논문의 최종판정이 게재가능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의 정당한 요청 및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3. <심사항목> 투고된 논문은 아래와 같이 심사 항목을 나누어 심사한다.

- ① 논문 제목의 적합성
- ② 영문 초록 내용의 간결성
- ③ ‘말소리와 음성과학’ 학회지 적합성 여부
- ④ 영문 초록 번역의 적합성
- ⑤ 서론의 적절성 (연구동기, 배경, 필요성, 이미 발표된 결과와의 관련성)
- ⑥ 논문 내용의 독창성
- ⑦ 연구방법, 결과, 유도과정 등의 간결성 및 적합성
- ⑧ 논문의 형식(참고문헌, 그림, 표, 기호 및 수식 표현)의 적합성
- ⑨ 논문의 학술적 가치(우수성, 공헌도)
- ⑩ 결론의 타당성

제6조 (논문심사 절차)

- 1. <논문의 접수> 편집부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투고자가 본회의 회원인지, 투고된 논문이 본회 관련 학문 분야에 적합한지, 그리고 본회 소정의 논문 형식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접수 여부를 통보한다.
- 2. <논문의 반려> 투고된 원고의 내용이나 양식이 학술지 논문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원고를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투고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된 논문의 해당 분야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 당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가능한 한 편집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그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의 책임(총평)편집위원이 된다. 위촉된 심사위원 중에 편집위원이 없을 경우 편집부위원장이 책임(총평)편집위원이 된다.
- 4. <심사 진행> 편집부위원장은 논문 투고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3명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과 논문 심사 시 유의 사항을 알린다. 책임(총평)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수락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요청한다. 책임(총평)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투고자가 수정·보완할 내용을 선의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5. <심사 기한> 일반투고논문의 경우 초심은 14일 이내에 재심은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긴급투고논문의 경우 초심은 14일 이내로 완료하고 수정후재심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호에 수록하지 않고 차기호로 이월시킬 수 있다. 긴급투고논문 재심사의 경우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중 하나로만 심사 결과를 결정하도록 책임(총평)편집위원이 심사위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6. <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 중 하나로 한다.
 - ① 게재가능(수정 없이 게재 가능함. 저자의 일부 수정 허용함)
 - ② 수정후게재(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수정한 다음 심사위원의 재심사 없이 책임(총평)편집위원의 검토 후 게재)
 - ③ 수정후재심사(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수정한 다음 ‘수정후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음)
 - ④ 게재불가(현재의 상태로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음. 동일 제목과 내용으로 다시 투고할 수 없음)
- 7. <심사 결과 판정> 책임(총평)편집위원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① 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 모두 일치할 경우 결과대로 판정한다. 단 수정후재심사로 일치한 경우 세 심사위원 모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 ② 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중 두 결과가 일치할 경우 다수 판정에 따른다. 단 수정후재심사가 다수일 경우 수정후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 ③ 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 모두 다를 경우 중간 결과를 따른다. 단 그 중간 결과가 수정후재심사일 경우 수정후재심사로 판정한 심사위원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8. <심사 결과 통보> 책임(총평)편집위원은 투고자에게 논문 접수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초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의 경우 수정본 접수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9. <투고 논문의 수정> 수정후게재나 수정후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10. <논문 철회 및 수정 미수행> 투고된 논문의 저자 전원이 논문 철회에 동의한 문서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낼 경우 저자 전원이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수정후게재 판정 후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수정후재심사를 통보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을 내리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로 간주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호 연기를 원칙으로 한다.
 11. <편집위원 논문의 편집권 제한>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해당 분야의 편집부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편집위원(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포함)이 투고 논문의 저자에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권을 행사할 수 없다.
 12. <게재 확정> 책임(총평)편집위원은 초심의 결과, 수정 사항 회신, 재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를 확정하고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편집위원장은 게재 확정과 관련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3. <게재 확정의 통보> 책임(총평)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4. <게재 확정된 논문의 수정>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논문의 체제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고자는 명백한 오류를 제외하고는 수정할 수 없다.
 15. <투고자의 윤리규정 준수> 심사 진행 도중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책임(총평)편집위원은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조 (발간 횟수 및 시기)

1. 한국음성학회 학회지 ‘말소리와 음성과학’은 매년 4회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2. 편집위원회는 발간 횟수와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추가로 특집호 또는 영문판을 발간할 수 있다.

제8조 (보안)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익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2.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